

당 헌

- 【2015년 09월 21일 제정】
- 【2016년 02월 26일 개정】
- 【2016년 03월 22일 개정】
- 【2016년 04월 09일 개정】
- 【2016년 04월 30일 개정】
- 【2020년 02월 01일 개정】
- 【2020년 03월 09일 개정】
- 【2020년 12월 09일 개정】
- 【2021년 03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대통합당(약칭:통합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국민대통합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절대 다수 중산층의 국민 행복을 위해 기본적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이며,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① 국민대통합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의 요건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하며, 탈당은 탈당증명서를 해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책임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79조에 따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⑥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50%로 한다.
 - 2.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 3.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 8 조의 2 (당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 당소속 시·도지사는 총재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9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10 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 제 11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제 12 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중앙위원회 의장 등 선출직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대의기관

제 1 절 전당대회

제 13 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그 대의원수는 10,000명 이내로 하고, 각 호의 대의원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총재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소속 국회의원
 5. 당소속 시·도지사
 6. 전국위원회 위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9.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2.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13.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혹은 총재가 추천하는 당원
- ②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비율과 결원시의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총재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5년마다 전당대회이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이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이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전국위원회

제 19 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각 지구당 위원장, 부총재, 최고위원, 총재로 구성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총재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총재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시·도당 위원장
5.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제 20 조 (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고,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

다.

③ 전국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79조를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단) ① 전국위원회 의장은 총재가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절 총재

제 23 조 (지위와 권한) ① 총재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며, 2인으로 한다.

② 총재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총재는 당직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④ 총재는 당무를 통할·조정한다.

⑤ 총재의 권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조 (총재의 선출) ① 총재는 전당대회에서 지명 또는 선출한다.

② 총재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총재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한다.

③ 총재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총재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총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선출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총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총재를 지명해야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총재의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5 조 (최고위원) ① 최고위원은 총재가 지명 또는 선출한다. 다만 선출시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② 총재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최고위원의 잔여정원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임기) 총재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 27 조 (권한대행) 총재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8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총재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재가 임명하는 총재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총재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최고위원회의

제 29 조 (구성) ①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재
2. 원내대표
3. 제28조제1항에 의해 지명 또는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국민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총재로 한다.

④ 최고위원의 부족으로 최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재가 최고위원회권한을 대행한다.

제 30 조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4.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5.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30-1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

①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사고 대표최고위원이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0-2조 (대표최고위원)

-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표최고위원이 맡는다.
-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하여 당헌 제5장을 따른다.
- ③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대표한다.

제 31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회의는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7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총재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절 당무집행기구

제 33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선거전략기획단, 미디어전략본부, 홍보 본부를 두고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34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선거전략기획단에 주요 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기획단장을 둔다.

③ 선거전략기획단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본부장과 미디어전략본부장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부분부장, 부대변인 등을 둔다.

④ 제1사무부총장은 선거전략기획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사무처와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5 조 (임명) ① 사무총장·미디어전략본부장·홍보본부장은 총재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사무부총장, 부분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제 36 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국민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회의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절 중앙위원회

제 37 조 (구성 및 기능) 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8 조 (임원) ①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20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제 39 조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절 윤리위원회

- 제 40 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둘 수도 있다.
 -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1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8 절 재정위원회

제 42 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3 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준칙)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 9 절 공직후보영입관리위원회

제 45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영입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공천 영입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②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위원은 공천영입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공천영입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⑦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6 조 (기능) ①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4. 우선추천지역 선정

- ② 제1항제1호는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 10 절 국민인권위원회

- 제 47 조 (구성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국민인권위원회를 둔다.(이하인권위원회라 칭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인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인권위원회에 법률지원단과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를 둔다.
 - ⑤ 인권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 절 인재영입위원회

- 제 48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9 조 (기능)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2.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3.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 12 절 국책자문위원회

제 50 조 (구성 및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의 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국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③ 국책자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책자문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 절 실버세대위원회

제 51 조 (구성 및 기능) ① 실버세대의 정치참여와 실버정책 수립, 기타 실버세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버세대위원회를 둔다.

② 실버세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버세대위원회에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실버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④ 실버세대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절 여성위원회

- 제 52 조 (구성 및 기능)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 ②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여성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여성위원장은 조직위원장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장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⑤ 여성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 절 청년위원회

- 제 53 조 (구성 및 기능) ① 청년층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 ②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청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청년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⑤ 청년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절 디지털정당위원회

- 제 54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디지털정당 구현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둔다.
- ②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디지털정당위원회에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⑤ 디지털정당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절 장애인복지위원회

- 제 55 조 (구성 및 기능)** ①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이하 장애인위원회라 칭한다)
- ②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장애인위원회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장애인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⑤ 장애인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절 홍보위원회

- 제 56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 ② 홍보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홍보위원회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홍보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홍보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9 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제 57 조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0 절 대외협력위원회

- 제 58 조 (구성 및 기능)** 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외협력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조직위원장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절 재외동포위원회

- 제 59 조 (구성 및 기능)** ① 재외동포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지지도 확산과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위원회를 둔다.
- ②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외동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직위원장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재외동포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재외동포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2 절 국제교류위원회

- 제 60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이하 국제위원회라 칭한다.)
- ② 국제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제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국제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국제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3 절 근로환경개선위원회

- 제 61조 (구성 및 기능) 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이하 노동위원회라 칭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조직위원장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노동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노동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절 통일환경조성위원회

- 제 62 조 (구성 및 기능) ①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이하 통일위원회라 칭한다)
- ② 통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통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통일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통일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5 절 재능기부나눔위원회

- 제 63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당원들이 가

진 재능을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나눔위원회를 둔다.(이하 재능나눔위원회라 칭한다)

- ② 재능나눔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능나눔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재능나눔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재능나눔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6 절 재해예방대책위원회

- 제 64 조 (구성 및 기능) 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예방,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위원회를 둔다.(이하 재해대책위원회라 칭한다.)
- ② 재해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해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재해대책위원장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④ 재해대책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절 총괄조직위원회

- 제 65 조 (구성 및 기능) ①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조직의 일사불란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괄조직위원회를 둔다. (이하 조직위원회라 칭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③ 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 산하에 두며,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한다.
- ④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를 제외한 전 조직을 추천하고, 검증하며 중앙당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고 관장한다.
- 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공천심사위원에 포함되며, 공명정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총재 및 사무총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직접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⑥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절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 제 66 조 (구성 및 기능) 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은 모바일정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③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9 절 국민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 제 67 조 (기타 특별기구) ① 총재는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국민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 ③ 총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 ④ 총재는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⑤ 총재는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⑥ 위 제3항 내지 제4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 제 68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1 절 시·도당

- 제 69 조 (시·도당대회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4.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5.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6. 지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7.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0 조 (시·도당대회)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4.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3.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4.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1-1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단,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위원장은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시·도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1-2 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총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2 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①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당은 정당법 제18조를 준용하여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③ 시·도당은 정당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④ 시·도당의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원내기구

제 32 절 의원총회

제 73 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74 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75 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6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77 조 (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78 조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79 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 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결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⑥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80 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 ② 제79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33 절 원내대표

제 81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82 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3 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임명
4. 국민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 84 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5 조 (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국민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국민정책위원회 부의장, 정

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6조(원내 부대표 등)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4 절 국민정책위원회

- 제 86 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국민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국민정책위원회에 국민정책위원회 의장과 국민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국민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국민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 ⑤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7 조 (기능) ① 국민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 6. 민원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 국민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8 조 (국민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국민정책위원회의 주재
 -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 4. 국민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국민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 ③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사퇴한다.
- ④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⑥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국민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 제 89 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총재가 지명한다. 단, 총재가 지명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국민참여경선인단 유효투표결과 80%(거부투표 삭감 후),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제3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하며 동률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⑤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0 조 (국민참여경선인단 구성 등)

-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의원 선거인
 2. 당원 선거인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 ② 당헌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 제1호는 국민 참여 경선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 제3호는 8분의3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30%로 한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군 복합 당원협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자치구나 시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경우 40세 미만이 30% 이상, 군단위의 기초자치 단체지역은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해외거주 선거인을 추가할 수 있다.
- ⑦ 국민 참여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1 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단, 제109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92-1 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9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2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3 조 (후보자 추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여론조사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거나 총재가 추천한다.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4 조 (국민공천배심원단)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씨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④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3.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5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거나 총재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총재가 공천한다.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6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추천한다.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당해 선거의 공천영입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7 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거나 총재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시·도지사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8 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여론조사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거나 총재가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지역여론조사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④ 포함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⑧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9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총재가 확정한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0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95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97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98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영입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101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02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

재가 임명하는 국회의원 1인을 포함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8 장 당헌개정

제 103 조 (개정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총재의 판단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제 104 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총재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7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5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총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 제 106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 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 ③ 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멸 당시의 총재로 하고, 간사는 1인을 두되 소멸 당시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④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정당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 ⑤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107 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108 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재와 협의하여 권한을 가진다.
-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총재와 협의하여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109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총재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 또는 총재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총재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110 조 (표결)

-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참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인전자 서명을 통한 대의기관 결의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2015.09.21.)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5년 09월 21일 개최한 중앙당 창당대회 의결

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최초 대표자 및 간부 선출에 관한규정)

- ① 최초의 대표자 즉, 최초의 총재는 총재선출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70% (거부투표 삭감 후),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총재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창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총재로 지명할 수 있다.
- ② 총재의 선출 및 총재선출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최초의 대표자와 간부는 중앙당 창당대회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 ④ 중앙당 창당대회시 개최되는 최초의 전당대회에서는 총재를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차기에 열릴 전당대회 이전 까지 당무 전반을 위임한다.

부 칙 (2016.02.26.)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02월 26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03.22.)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03월 22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04.09.)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04월 09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04.30.)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04월 30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02.01.)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02월 01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03.09.)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03월 09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12.09.)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12월 09일 개최한 임시전당대회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1.03.12.)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1년 03월 12일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